
입 법 정 보

2018-7호



목 차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
5.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7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
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8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9.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
10.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12
1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3
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5
1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7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8
1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8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9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21
2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3
2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3
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4
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4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5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6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3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9
3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1
3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1
3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37.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3
38.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3
3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34
40.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6
4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36
43.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8
4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38
4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9
4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9
4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0
4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0
5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41
5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장).....	42
5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2
53.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43
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4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5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6
5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6
58.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7
5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8
6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8
61.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9
6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0
63.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0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1
6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1
6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2
6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2
6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3
6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53

정부입법 예고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4. 2.

• 마감일자 : 2018. 5. 14.

○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함.

나.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5조제8항제6호 · 제7호 · 제8호 신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2)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다음사항에 관한 검사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 사립학교법 에 따라 제출 · 공시된 학교법인 예 · 결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대학설립 · 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 규정 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 교사 보유현황이 같은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 증여 · 교환 · 용도변경 ·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조건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여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 계획서의 접수 업무를 한국사 학진흥재단에 위탁함.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2.

• 마감일자 : 2018. 4. 12.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장 지명 및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한편,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조정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 기한을 설정하고 당사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장 지명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3항 개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지명 범위를 사회보장위원회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확대

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 (안 제12조제4항 제4호 신설)

-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전문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다. 조정의 절차 및 기한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 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

• 마감일자 : 2018. 5. 14.

-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

- 1) 학교 부지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되고 있어,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 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 2)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필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 가능하도록 허용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제43조제3항 및 제5항)

-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여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와 유흥토지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제56조의2제1항)

- 지역 지구 등의 변경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로 개발수요가 높아 지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을 확대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4. 2.
- 마감일자 : 2018. 5. 14.

-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 제15043호, 2017.11.28. 개정, 2018.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 규정(안 제10조의3)

가.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

한 학생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보건교사가 제공하는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와 의료행위 및 기타 보건활동을 보조하도록 함

나. 보조인력은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므로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함

5.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4. 3.

• 마감일자 : 2018. 5. 14.

○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18.1.31. 지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임명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확보하도록 장애인기업지원센터 대표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3.

• 마감일자 : 2018. 5. 14.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통보한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의 계좌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 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조제3항, 별표2의2)

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4. 3.

● 마감일자 : 2018. 5. 14.

○ 신탁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정 정비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일부 준용(안 제6조)

1)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신탁중앙회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

2)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탁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안 제9조)

1) 현재 조합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2)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영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안 제39조, 제95조)

1) 현재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의 사업 종류로 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라. 조합 및 중앙회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근거 마련(안 제39조, 제78조)

1) 조합 및 중앙회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조합 및 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마.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등 확대 (안 제39조, 제78조, 제95조)

1) 신탁법에서는 타 금융관련법령과 달리 부대사업 및 목적사업의 승인 근거가 없어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범위가 불분명

2) ‘부대사업’과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승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은 별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과 목적사업에 대한 승인은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도록 함

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39조 및 제37조)

1) 조합이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게 하되,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안 제39조의2, 제95조, 제101조)

1)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꺾기’)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

2)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며,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
(안 제78조)

1)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함

2)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등 (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1)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조합, 중앙회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금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차.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제출을 규정한 감독규정의 근거 마련 (안 제83조의3, 제89조)

1)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조합 및 중앙회가 재무상태개선계획 등을 중앙회장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

2)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에, 중앙회장이 조합에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 또는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재관련 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제84조, 제95조)

1) 임직원의 수뢰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에도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반영하여 ‘견책’을 ‘문책경고’, ‘주의·경고’를 ‘주의적경고’, ‘주의’로 변경하고, ‘주의적경고’ ‘주의’의 조치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

3) 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② 퇴임한 임원,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③ 업무의 전부정지 및 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④ 고객응대직원의 보호, ⑤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⑥ 과태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농수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균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타.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99조의2)

1) 신탁중앙회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받은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형법상 수뢰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처벌에 한계가 존재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중앙회 임직원의 수뢰죄 등(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패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파. 용어 정비(안 제24조)

1)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실무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 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3.

● 마감일자 : 2018. 5. 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원혜영 의원, ‘18.6.14. 시행)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편입 면적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18.2.9.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편입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 제한 (안 제15조의2 신설)

-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을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

나.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1호,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신설, 제40조제1항제 5호, 제40조제3항제2호)

- 조례 수립주체 ‘도’ 누락, 소규모재건축 사업대상 인용조항 오류,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준용규정 명확화 등 법 시행 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

9.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4. 4. ● 마감일자 : 2018. 5. 1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유형과 방해 행위시 과태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규정 신설(안 제9조)
 -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로 규정함
 -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규정 신설(안 제10조)
 -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함
 - 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규정 신설(안 제11조)
 -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의 행위 태양 명시함

10.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8. 4. 4. ● 마감일자 : 2018. 5. 14.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 소음·진동배출사업자가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으로 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음·진동관리법」 등 6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1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4. 4.

● 마감일자 : 2018. 5. 14.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데이터를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측정 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 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이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됨(2017.12.12.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축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참조 표준의 활용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조 표준의 제정 및 보급 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측정표준은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의 절차로 개발·채택하여 사용함에 따라, 국가측정표준을 별도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간 채택된 실적도 없어 이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4.

● 마감일자 : 2018. 5. 14.

- 4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를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미터 초과 고도에서 비행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중이나,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한편, 항공기도 사람 및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계비행 시 최저비행 고도를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300미터로 규정 중으로,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 비행고도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 고도와 동일하게 규정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4.
- 마감일자 : 2018. 5. 14.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초기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축진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초기임대료 산출기준,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집주인 임대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통해 건설 및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함.

나. 주거지원대상자의 요건(안 제1조의3 신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85퍼센트 이하로 공급하는 주거지원대상자를 별표1에서 정한 주택, 소득 등의 요건을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규정함.

다. 축진지구 조성공사 준공검사(안 제14조의2 신설)

- 시행자는 축진지구 조성공사 준공검사 신청 시에 준공설계도서, 지적측량성과도 등 준공검사시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준공검사 완료 후 관보 또는 공보에 조성사업 완료 공고를 하도록 함.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과 주택 신청·공급 절차

(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 신설)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의 소득요건 등의 입주자격 갖춘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기준을 정함.
- 2) 30호 이상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 선정시 주택소유 및 소득요건 등의 요건을 확인하도록 함.
- 3)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임차인을 상시 모집하여 공급하되, 예비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공급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임대주택 등의 중복입주 확인 절차(안 제14조의11 신설)

- 임대사업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임차인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입차·계약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입주가 확인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 산출 기준(안 제17조의2 신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는 주변지역의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대상자는 시세의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대상자는 85퍼센트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4.
- 마감일자 : 2018. 5. 14.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초기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역세권 등에서 촉진지구 지정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 기여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금납부, 복합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

복합지원시설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설치·운영기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적용 단지 범위 및 절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의 범위(안 제3조의2 신설)

- 도심내 소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역세권등에서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에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학교, 연구소를 포함함.

나. 복합지원시설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및 운영기준(안 제3조의3, 제17조의5, 제18조의2신설)

-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 입주 가능하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정하고, 복합지원시설의 시설규모, 임대료, 공급절차 등 설치 및 임대운영사항을 지자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하는 단지와 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절차, 현금납부 기준 등(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 1)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하는 단지는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최소 기준 호수인 30호 이상으로 함.
- 2)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구별없이 동일한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선정은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함.
- 3) 현금납부를 위한 토지가격은 전체 토지에 기부채납 비율만큼 곱한 가격으로 산출하고, 감정평가 비용은 시·도지사와 임대사업자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도록 함.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안 제30조제2항 신설)

-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규정함

- 마. 20년 임대주택 양도시 허가기준 등(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시설보수 유지비 등이 해당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대주택을 양도 허가하도록 하여 20년 임대주택의 양도허가에 따른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바.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기준 추가(안 제35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주택 소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한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

1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5.
 - 마감일자 : 2018. 5. 15.
- 대한적십자사는 법률에 적십자사의 운영과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음. 이에 시행령의 요청자료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그리고 법률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적십자사가 사업자를 통한 회비모금을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2조)
-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비모금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과세자료(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필요
 - 현행 요청 근거인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자료는 확보 곤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과세정보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 가능한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

- 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안 제5조 신설)
- 법률에서 위임했으나 시행령에 마련하지 않았던 부과기준 신설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적용)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4. 5.
 - 마감일자 : 2018. 4. 25.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6명 이내의 위원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추가(안 제37조제2항)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1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4. 5.
 - 마감일자 : 2018. 4. 25.
- 피치료감호청구인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를 구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6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구인장신청서, 유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4. 5.

• 마감일자 : 2018. 5. 15.

- 피치료감호청구인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를 구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6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기준 및 피치료감호청구인등에 대한 격리 등 제한 기준, 준수사항 위반 피보호관찰자 구인 신청 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1)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 심신장애의 정도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의 적합한 처우를 하도록 함.
- 2)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상담, 심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 방법 등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 1)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보호조치의 방법을 격리,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로 한정하여 신체적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 2) 보호조치 기간의 경우, 격리를 통한 보호조치의 경우 15일 이내,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면회 가능 시간 등 규정(안 제7조의4 신설)

- 1)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 2) 변호인과 접견하는 피치료감호자등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 등의 면회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준수사항 추가·변경 또는 삭제 관련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 1)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을 위한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담당보호 관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피보호관찰자 심문 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관련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6 신설)

- 1)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하기 위하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 2)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
- 3) 긴급구인서의 경우 긴급구인한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함.

바.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관련 기준 마련(안 제11조의7 내지 제11조의10 신설)

- 1)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유치할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 2) 법원이 유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사. 유치 후 가중료등 신청 절차 등 기준 마련(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 1)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 중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가중료 또는 치료의 위탁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가중료 또는 치료의 위탁 취소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함.
- 2)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함.

- 아.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2조제3항제4호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치료비용 국가부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함.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4. 5.
 - 마감일자 : 2018. 5. 15.
- 법률유보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신고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처리 간주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1조, 제24조, 제28조, 제99조)
 -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시설의 처분기준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2조)
 - 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검사관 응시 자격 부여(안 제82조)
 - 라.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98조)
 - 마.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107조, 제113조)

2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5.
 - 마감일자 : 2018. 5. 18.
- 건축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과 재실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방화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사용자가 많은 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 (안 제15조제6항 개정)

-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연장사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나.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안 제46조제2항 개정)

-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을 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개정)

-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벽체로 하도록 함.

2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사항 정정(안 제5조)

- 1)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벌목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조난 구호 등)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 (법 제8조제1항 → 제2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으로 정함(안 제8조)

- 1)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등화 하고자 함(안 제8조)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등 변경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적용예외 도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대변기 칸,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은 기저귀와 같이 물에 녹지 않아 변기에 버려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적용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나.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적용예외 도입

-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용 화장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위생용품 수거함이 필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개선

- 1) 공중화장실 설치면적, 대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엄격하게 규정된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시설여건,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세세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설치기준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공중화장실에 건식소변기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2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대책 수립의 전문성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에 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국정과제 중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내용 포함 (법 제6조의2 신설)
 - 2) 기관장 임명 절차를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청 및 대통령 임명으로 상향(법 제11조제2항 개정)
 - 3) 안전기술원 직원의 임면권자를 기관장으로 명확화(법 제12조제2항 신설)
 - 4) 임직원의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의 겸직 및 그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 등 중립의무 명확화(법 제12조의2 신설)
 - 5) 안전기술원 임직원의 공무원의제조항 명확화(법 제25조 신설)

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 수리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진열상자 등 시설기준 예외를 인정하며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하고 영업의 양도시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체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및 시설기준 완화(안 제35조, 제36조, 별표10, 별표 13, 별지 제23호서식, 제27호서식)
 - 같은 관할 지역 내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를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불편을 해소함
- 나. 축산물 영업의 허가·신고 및 영업 승계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30조, 제35조, 제40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 축산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법인의 영업양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 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안 별표 10)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전국 한우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판촉을 활성화함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에 따라 거래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기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확대

나.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조건 완화(안 제20조)

- 공공법인이 국·공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소유 토지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다. 수변 구역 내 개인·가족자연장지 설치 및 문화재·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면적 상한확대(안 제22조)

-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 구역 내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및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조성면적 상한을 현행 3만에서 10만 제곱미터로 확대.

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등의 봉안기간 종료 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안 제9조, 제24조, 제26조의2)

- 무연고 시신,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는 매장·봉안기간 종료 후 집단매장 대신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하도록 함.

마.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함(별표7)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에 따라 거래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연고시신 처리 공고시 장사정보시스템에도 등록(안 제4조)

-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를 일간신문과 시·도 및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던 것을 장사정보시스템에도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여 한 번에 무연고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함

나. 장사시설 거래명세서 발급 세부기준 규정(안 제15조, 안 제20조의6)

- 장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의 이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발급시 장사시설의 상호 및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 연월일 등 세부항목이 포함된 서식 신설

다. 거래명세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별표 5)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편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2호, 2017. 12. 19.공포)됨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교육책임자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8조)

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편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공포)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되면서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지법」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8조)
-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가 각각 제59조의10, 제59조의11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36조의7, 제36조의8, 제36조의10, 제42조의2)

3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장애연금 지급 및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자료에 대한 열람동의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신고 절차(안 제22조)
 - 시행령에서 혼인 기간 중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신고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 나. 장애연금 청구인의 자료 열람 동의절차 간소화(별지 제16호 및 제21호 서식)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에 별도 동의서 징구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안 제45조의2 신설)
 -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선고 기간, 합의·재판상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확정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안 제2조)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인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
 - 다. 생계 유지자의 급여종별 대상자별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 부양가족연금,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개선
 - 라. 연금보험료 등 납부사실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70조의3 및 제70조의4)

3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통보 시기·내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의 검수확인서 생략 품목을 확대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발송하는 급여일수 통보서가 수급권자의 질환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획일적 발송시기를 삭제함(안 제8조의5제1항 개정)
 - 나. 장애인보장구 중 검수확인서 제출 제외 품목을 확대하고, 보장구급여 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 다. 상한일수 초과자 중 불승인자의 본인부담률을 변경함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100인 항목에서 삭제함(별표 1의2 제1호마목 삭제)

3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가 급여일수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신고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일수 상한기준 초과자 중 급여일수 연장승인 미 신청자 및 불승인자의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 변경(안 별표 1 제4호 신설)
 - 상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않은 사람에게 종전에는 의료급여를 제한(본인부담 100분의 100)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약국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8조제1항제10호)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함.

나. 비리발생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조달청 위탁대상 추가 및 비리사실 통지 의무화(안 제7조제2항, 동조 제4항 및 제5항)

- 위탁대상에 계약관련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계약비리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17조)

- 국제입찰에 의한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달기업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입찰에 대하여도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사유도 계약금액조정과 지체상금에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함

3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6.
- 마감일자 : 2018. 5. 16.

-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종을 신설하여 초소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적합한자동차 안전기준 등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시행규칙 안 별표1)

-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초소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총무게 600Kg(화물자동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 배기량은 250cc(정격출력 15kW) 이하로 제한하여 구분함

- 나. 승용·화물자동차의 경형 범주내에 초소형을 신설(시행규칙 안 별표1)
- 경형자동차 범주내에 초소형을 포함시켜 경형 자동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7.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주요내용

가. 징계등의 관한 회의의 비공개 사항 구체화

-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인 적힌 문서 등 회의의 비공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

나.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다.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38.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주요내용

가. 징계등의 관한 회의의 비공개 사항 구체화

-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인 적힌 문서 등 회의의 비공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

나.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다.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3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현행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형태를 면허사업체제로 일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체육행사 등에 한정된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유·도선안전관리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도선과 관련된 안전정책 및 분쟁 등 조정을 위한 유·도선 안전관리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도선사업 지원을 위한 유·도선 현대화 계획 수립 및 현대화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며,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의 구분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4조제1항)

- 1) 현행 유·도선 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사업은 면허사업 형태로 처리 및 운영되고 있으며,
- 2) 면허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뿐 적용을 달리 함에 따른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유·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제로 일원화 함.

나. 한정면허제도 신설(안 제4조제2항)

- 1) 유·도선사업자가 다른 구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및 축제·체육·공연행사 등에 한정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신규 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에 따라,
- 2) 한정된 기간 중 적용되는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한정면허 발급 시 이미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에 협의토록 함.

다. 낚시유선 등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안 제17조제4항)

- 1) 영업구역의 수심·수세·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유·도선(5톤 미만)중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 2) 외부갑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낚시유선 및 기상악화 시 선장이 지정하는 유·도선에 대하여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함.

라. 유·도선안전관리자 제도 신설(안 제24조)

- 1) 유·도선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 중에서 유·도선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 2)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안전관리자의 지정(10일 이내 신고)및 교육 등은 행정안전부령·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유·도선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

- 1) 유·도선 안전정책 조정, 관할관청 간 분쟁 및 타 법률에 따른 유사 업종과의 영업구역 중첩등에 따른 분쟁 등 조정을 위하여 유·도선안전관리협의회(유·도선안전관리실무협의회 포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2) 유·도선안전관리협의회 조정사무 및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바. 유·도선현대화계획 수립 및 현대화 지원사업, 공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등 신설(안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

- 1) 유·도선의 지속적인 안전과 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현대화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근거 등을 마련하고,
- 2) 유·도선 관련 단체의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도선 공제사업에 대한 보조·융자(알선포함) 등 지원 근거를 마련 함.

사.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평가 제도 신설(안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

- 1) 유·도선의 안전 및 승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 2) 평가의 방법과 절차, 평가 후 조치(우대 또는 불이익), 평가결과 공표 등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40.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나.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강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다.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 고려사유로 명시

-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 고려하도록 함

4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공직자 재산의 최초등록 시 부동산 등의 실제가치 반영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변동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고시로 인한 의무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취급 승인심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의 최초신고 시 부동산 등의 실제가치 반영 강화(안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 부동산 등(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의 최초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나. 출산휴가 공무원의 재산변동신고 부담 완화(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허가는 출산휴가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

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대상 확대 등(안 제33조제2항, 제5항, 제6항)

- 취업제한기관 고시대상에 취업이 제한되는 법인 단체(협회)를 포함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에 대한 판단기준의 명확성 개선

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심사의 편의성 제고(안 제35조의2 제4항 신설)

- 취업심사단계에서 향후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취업승인 신청 시 업무취급승인의 필요성 검토내용 등도 함께 제출

마. 금치산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안 제5조의5 제3항)

- 2013년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4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융합신기술 관련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신속히 도입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제 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의 신속한 산업표준 제정 절차 마련(안 시행령 제16조)

- 1)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 단체표준 제 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하여 산업표준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을 단축

43.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법률에서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의2 신설)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4에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4] 신설)
 -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 2)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함

4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출연금 부족 또는 초과 납부가 있는 때에는 다음 달 출연금 납부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5조 신설)

4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31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1 신설)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에 정함

4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4. 1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29호, 2017.10.31.)」으로 국립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5급 1, 6급 1, 7급 1)을 충원하는 한편, 지방보훈청이 조정·통제하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4. 9.
 - 마감일자 : 2018. 5. 21.
-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에 맞게 약학대학의 학생 선발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각 약학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편입학 및 신입학 방식 중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5조제2항)
- 나. 편입학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해당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제5항)

다. 약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통합 6년제 전환 후 2년 간
현행 체제를 병행하도록 경과조치 마련(부칙)

4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4. 10. ● 마감일자 : 2018. 5. 21.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3.27.공포, 9.28.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 절차 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양육비 채권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안 제7조의2 신설)
 -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안 제7조의3, 별지서식 신설)
 -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통지 등(안 제8조제1항 개정 및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4. 10. ● 마감일자 : 2018. 5. 21.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3.27.공포, 9.28.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 절차 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확대(안 제8조제1항)
 - 나.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안 제8조의2 신설)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전달방법(안 제10조제2항)

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통지 방법(안 제10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5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4. 10.

● 마감일자 : 2018. 5. 21.

○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여부의 신속한 확인과 적기 방제를 위해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을 하거나 수목의 일부(시료)를 채취할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역학조사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관련 규정이 행정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행정조사 요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선충병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행위 시 사전통지 예외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비관찰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은 사전통지 없이 재선충병 예비관찰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감염 확인을 위해 수목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 마련

나. 역학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화(안 제7조의2)

- 역학조사 대상자에게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되 감염목 등의 인위적 이동 우려 또는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 등 일부 예외규정 마련

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목적 명확화(안 제13조)

- 감염목등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을 실시함을 명시

5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장)

- 예고일자 : 2018. 4. 10.
- 마감일자 : 2018. 5. 21.
-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 생략 단서 조항 신설(안 제35조 제1호,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5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4. 11.
- 마감일자 : 2018. 5. 22.
- 의료기관 조직은행의 경우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기록 보관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컴퓨터, 프린터, 서가 등을 삭제하여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제1호나목)

53.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8. 4. 11.

• 마감일자 : 2018. 4. 26.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16종에 해당하지 않은 새로운 옥외광고물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획득 방법을 인터넷사이트,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으로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획득했던 것을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SNS 등 새로운 동의획득 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지나치게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된 임산물의 정의를 신기술을 적용한 임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 신산업 등을 이용한 산업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현행 16종에 해당하지 않은 새로운 옥외광고물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조)

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법을 삭제(안 제2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획득 방법을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SNS 등 새로운 동의획득 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조)

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안 제4조)

마.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도검 등 제조업의 작업장 면적 기준 완화(안 제5조)

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같은 영 제45조에 따른 기업경영림의 경영에 국산재를 활용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조업을 추가 (안 제7조)
- 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신규 분류항목 마련(안 제8조)

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4. 11.
- 마감일자 : 2018. 5. 21.
-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노동자 중 임금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임금감소를 추가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근로자 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하는 등 사용자의 책무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제6의3호 신설)
 -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
 - 나.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 부여 (안 제31조)
 -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사용자의 책무 부여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4. 11.

• 마감일자 : 2018. 5. 1.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 절차,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 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주 운영 연수·교육 시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규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토록 하고 공단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 발급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안 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8조의4)

- 공단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면접, 전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의 목적·시기·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전화, 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함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4. 11.

• 마감일자 : 2018. 5. 1.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5조의2)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
- 교육방법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실시 및 권한 위임(안 제19조의2, 제8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실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5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4. 12.

• 마감일자 : 2018. 5. 23.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행위허가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출입허가 등 인허가·신고 간 주제 적용 및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8.3.20. 공포, 2018.6.28.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출입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조정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을 추가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 등 처리기간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산림보호법에 인허가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 및 입산통제구역에서 입산허가신청서상의 처리기간 정비
- 나. 입산통제구역에서 차량통행 제한(안 제14조제1항)
 -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 뿐만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58.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4. 12.
- 마감일자 : 2018. 5. 23.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기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법률로 규정하고, 산림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8.3.20. 공포, 2018.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를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대상 기관 정비(안 제26조제1항제1호)
 - 산림보호법 제39조제1항제5호 개정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기관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공원사무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나.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안제32조의6제4항)
 -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12. • 마감일자 : 2018. 5. 23.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마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증거확보, 청문 및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근거마련
 - 나.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거나 대체부품 인증을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성능·품질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게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6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12. • 마감일자 : 2018. 4. 20.
-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우선 공급제 도입(안 제41조)

- 공급대상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서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퍼센트)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고, 공급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나.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9조의1 신설)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고가주택(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61.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4. 13.
- 마감일자 : 2018. 5. 23.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17.12.12.)함에 따라 시행 ('18.6.13.)에 맞추어 시행령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 및 전면 개정된 광산안전법령의 시행 ('17.1.7.)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을 위해 노천채굴장 뿐만 아니라 갱내채굴장에서도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수에는 노천채굴 장에서의 안전조치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갱내채굴장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포함되도록 「제4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1 항제1호」의 ‘노천채굴장’을 노천채굴장과 갱내채굴장을 포괄 하는 용어인 ‘채굴작업장’으로 변경

나. 현행 수에서는 광업시설 중 벨트컨베이어가 성능검사 대상이 아니나, 최근 화재, 협착 등 벨트 컨베이어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 시설을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제12조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까지, 제5호”를 “제5호까지”로 변경

다. 2018.6.13. 시행 예정인 법에 광산안전관리직원 부재 시 광산안전 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법 제26조제1항)이 신설되고 현행 법 제26조제1항이 제26조 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법 조항의 변경사항을 속에 반영하기 위해 별표 개정

6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4. 13. ● 마감일자 : 2018. 5. 23.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기반확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와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 추가(안 제1조의2)
 -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 중인 기존 11개 부처 외에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 나.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 추가(안 제3조제2항)
 -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신규 참여부처인 경찰청, 농촌진흥청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함.

63.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4. 13. ● 마감일자 : 2018. 5. 23.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18.2.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안 제11조 제1항 신설)
 - 1)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있는 근거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으로 전문인력의 요건 신설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13.
- 마감일자 : 2018. 4. 20.
- 임대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자 함

6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13.
- 마감일자 : 2018. 5. 23.
- 주택의 청약당첨 후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전에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전매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제1호가목)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로 함.

6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13.
- 마감일자 : 2018. 4. 24.
-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자금부족등으로 불법전매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6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13.
- 마감일자 : 2018. 5. 23.
-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식증명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32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 신청방법과 증명서 발급절차를 마련하고, 한·미 항공안전협정에서 양국이 소형항공기 범위까지 상호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를 개발하려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검사범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 나.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이 면제됨에 따라 관련 신청절차를 정비(안 제26조)
 - 다.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 변경 등 발생시 보고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라. 항공기 감항증명서 등의 발급절차를 실무에 적합하도록 순서를 조정(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6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13. ● 마감일자 : 2018. 5. 23.
-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식증명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32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4. 13. ● 마감일자 : 2018. 5. 3.
- 방위사업법이 소요결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제15051호, 2017.11.28., 일부개정)됨에 따라 합참이 소요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국제계약지원관의 해외 파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와 함정무기체계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소요결정 시 방위사업청,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개선(안 제22조)
 - 나. 국제계약지원관 해외파견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 다.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 라. 함정무기체계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제71조)